

##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

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사유

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사하구 신평동 646번지 신평차량기지창내 유희지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

### 3. 취득대상 재산현황

소재지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예정가격(천원)	소유자
신평동 646번지	잡종지	16,700	12,500,000	부산교통공사

### 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

### 5. 검토의견

- 부산교통공사 소유의 신평동 646번지 신평차량기지창내 유희지는 121,330m<sup>2</sup>(36,760평)인바, 이 중 우리 구청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6,700m<sup>2</sup>(5,060평)을 구입하는 것은 현재의 청사가 협소하고 주민이 민원 때문에 구청을 방문할 경우 불편을 주므로 이 부지를 구입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